

14.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 2023년 10월 26일
- 제안자 : 박소영 · 권기훈 · 김정옥 · 김태우 · 류종우 · 박종필
윤영애 · 육정미 · 이성오 · 이영애 · 이재숙 · 이태손
전경원 · 조경구 · 하중환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7일
- 상정일자
 -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3년 11월 22일) :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소영 의원)

□ 제안이유

-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갈등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주차공유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주차공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주차공유 사업 추진 관련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주차공유 사업 추진 관련 구·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주차공유 운영 현황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익)

-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완화하여 불법 주·정차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차 공유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전국에서 주차시비를 시작으로 폭행,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대구시에서는 2019년부터 주택·상가 인근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에는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주차공간 공유시 시설개선비, 배상책임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건축물,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 사업기간 : '23. 1월 ~ 12월
- 사업비 : 600백만원 (시비 300, 구·군 300), 8개 구·군
- 지원금액 : 공사비 최고 20백만원 (10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 (차단기, CCTV 등),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 시행주체 : 각 구·군 시행

□ 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추진내역		
	계	시비	구·군비	개소수	면 수	집행액
계	3,425	1,700	1,725	124	4,495	1,987
2019	425	200	225	27	1,799	384
2020	800	400	400	37	913	676
2021	800	400	400	30	803	532
2022	800	400	400	30	980	395
2023	600	300	300			

※ 개방현황('22.12월): 105개소 3,988면(학교12, 종교시설 67, 금융기관 5, 상가 5, 공공기관 4, 아파트 1, 기타 11)

□ 추진경과

- 2023년 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 '23. 2월
- 시 보조금 교부 300백만원 (8개 구·군) : '23. 3월
- 구·군별 신청접수 및 시설지원 추진 : '23. 3월 ~

-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주차장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 시스템을 보다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여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함께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 조성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주차공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유신청 접수, 대상선정, 보조금 집행 등 실무를 추진하는 구·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주차공유계획 수립 시부터 구·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주차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공유주차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공유주차장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 또한 주차 이용시간 미준수, 건물주 권리·의무 범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철저한 안내와 주차공유 관련 시민의식 개선 홍보 등을 통해 분쟁이 사전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주차장 공유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차 공간 제공자에게 운영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주차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시 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당부드리며,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주차장 공유 사업 추진 시 건물주 등 주차장 제공 당사자가 갑자기 변경되었을 경우, 설치 지원한 주차관리 시설을 바로 철거해야 하는지 궁금함.	○ 건물주 등 주차장 제공 당사자가 갑자기 변경되더라도, 약정 체결 기간동안에는 사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 시설을 바로 철거할 필요는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